

의안번호	2217665
의 퇴 인	서영석 의원
회 답 일	2026.06.29.
추계번호	26C166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3조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항)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명 이상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이하 “특수교육교원”이라 한다)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로 한다.	의무규정
2	안 제16조의2 (장애학생의 보호)	(제2항)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6조의2 (장애학생의 보호)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①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특수교육 전문가 등을 포함하고, ②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심의위원회가 전문가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함
 -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은 각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징계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함¹⁾

- 심의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특수교육 및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나, 해당 절차 실시 여부가 심의위원회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²⁾
- 이에 개정안은 ①심의위원회에 특수교육 전문가 등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②심의과정에서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함

□ 개정안 시행 시 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의견청취에 따른 수당 지급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의견 청취 횟수 및 지급 인원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이를 산출하기 곤란함

- 개정안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특수교육 및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전문가에 대한 수당 등 지급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개정안의 의견 청취 절차는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을 전제로 하여 그 횟수의 추정이 어렵고,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학교폭력 통계가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대상 인원 추계에 한계가 있음
 - 교육부는 통합학급과 특수학급 학생을 구분하지 않고 학교폭력 통계를 관리하고 있어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학교폭력 통계만을 추출하기 어려움
 - 참고로, 2025년 기준 특수교육 대상자 120,735명 중 74%인 89,440명이 일반학교에 재학 중임

1)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표] 기관별 특수교육 대상자 수

(단위: 명, %)

구분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교육 지원센터	계
		특수학급	통합학급		
특수교육대상자 수	31,027 (25.7)	69,908 (57.9)	19,532 (16.2)	268 (0.2)	120,735 (100)

자료: 교육부, 「2025 특수교육통계」

- 또한, 현행 법령 및 지침을 통해 전문가 참여와 관련된 유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만을 분리하여 산출하기 곤란함
 -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
 - 참고로, 교육부는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통해 장애학생이 피·가해학생인 경우, 사안조사 및 심의위원회 심의 시 특수교육 전문가의 참여를 권고하고 있음
- 한편, 개정안에 따라 특수교육 교원 등 소속 직원이 심의위원회 구성원으로 위촉되고 심의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소관업무에 해당하여 별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실제로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의 규모는 제한적일 수 있음⁴⁾

□ 이에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3)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4) 기획예산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2026.1.), 151p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직무대리)
사회비용추계과	정현수	이제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현수	02-6788-4627	jhs@assembly.go.kr